

# kiri Weekly

2011.8.16 제144호

## 이슈

유럽 및 미국의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(ORSA)  
주요 내용과 시사점

## 포커스

살인 및 자살을 동반한 보험범죄 예방 방안  
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의미와 시사점

## 금융보험 해설

자본시장제도 이해(1): 프라임 브로커(Prime Broker)

## 국내금융 뉴스

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현황  
7월 청년고용 개선과 물가불안 지속

## 해외금융 뉴스

북미 \_ 미 연준, 2013년까지 초저금리 유지  
유럽 \_ 유럽, 금융시장 불안 증대  
일본 \_ 일본, 쌀 선물거래 재개 후 일시적 거래 중단  
중국 \_ 중국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 최고치 다시 돌파  
2010년, 자동차책임보험 등장 후 최대 적자 기록

## 금융시장 주요지표

**kiri** 보험연구원  
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

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,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  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 8층 보험연구원 (문의: 김세환 부장 / 02-3775-9051)



# 유럽 및 미국의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(ORSA) 주요 내용과 시사점

장동식 수석연구원

## 요약

-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(RBC)와 리스크 평가제도(RAAS)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, 유럽(EU) 및 미국 보험감독당국은 동 제도에 추가로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임.
  -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한편, 리스크 평가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함.
  - 유럽과 미국은 보험회사 스스로 자사 리스크를 평가·보고한 내용을 보험감독당국이 점검하는 시스템인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(ORSA: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)를 운영할 예정임.
- 유럽 및 미국의 ORSA는 보험회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통합되어지는 기능으로서 단순한 지급여력 평가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.
  - 보험회사의 ORSA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하나의 기능이며, 지급여력 평가 시 적용한 기준보다 강화된 리스크 프로파일, 신뢰수준, 평가기간 등이 적용될 수 있음.
  - 또한, 보험회사의 ORSA는 감독당국의 점검 측면에서 우리나라 리스크 평가제도와 유사하나, 보험회사의 리스크 측정 및 평가 모형, 미래지향적 관점 등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이함.
- 유럽 및 미국의 ORSA 도입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과 보험감독당국의 리스크 중심 감독을 강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  - 보험회사(특히, 이사회)는 현재 또는 미래의 지급여력 포지션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을 파악하여 자기 자본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.
  - 보험회사는 자사의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관리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보험감독당국 등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.
  - 보험감독당국은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포지션 변화, 보험회사의 리스크 측정·평가 모형과 표준모형 간 차이 등을 파악함으로써 리스크 중심 감독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.

## 1. 검토배경



■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최근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(이하 'RBC 제도'라 함)로 자기자본제도를 일원화 하는 한편, 리스크 평가제도(이하 'RAAS 제도'라 함)도 일부 개정함.

- RBC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된 후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병행 실시되었으나, 2011년 4월부터는 RBC 제도만 시행되고 있음.
- RAAS 제도는 2007년에 도입되었고, 2011년 4월에는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 간소화, 평가결과의 활용 제고 등을 위해 일부 개정됨.
- 또한,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반영하는 내부모형 승인제도가 검토되고 있음.

■ 한편, 유럽(EU)과 미국(NAIC)은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<sup>1)</sup>에 더하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(ORSA: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)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.

- 유럽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ORSA를 실시하고, 이를 보험감독당국이 점검한다는 내용을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Solvency II 지침에 규정함.<sup>2)</sup>
-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(이하 'IAIS'라 함)는 2010년 10월 ORSA를 각국 보험감독당국에 권고함.
- 미국(NAIC)은 2011년 1월 SMI(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) 일환으로 마련한 ORSA (안)을 공표하였으며, 미국은 이를 위해 EU Solvency II 및 IAIS의 ORSA를 참조함.

〈표 1〉 Solvency II의 3층 체계

1층(Pillar 1) 양적 요건	2층(Pillar 2) 질적 요건	3층(Pillar 3) 보고 및 공시
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표준모형 내부모형	내부통제 리스크 관리(ORSA 포함) 감독당국의 점검(SRP) 및 자본 확충(capital add-on)	감독당국 보고 공시 시장규율

자료: EIOPA(2011), "ORSA - The heart of Solvency II".

- 1)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는 유럽의 경우 Solvency II의 Pillar 1 내 표준모형 또는 내부모형을 이용해 요구자본(SCR) 또는 최소요구자본(MCR)을 산출하는 제도를, 미국의 경우 NAIC의 RBC 제도를 말함.
- 2) 유럽은 Omnibus II 지침(안)을 통해 Solvency II로의 완전 이행을 2012년 10월에서 2013년 1월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하였으며, 최근에는 이를 2014년 1월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.

- 유럽 및 미국의 ORSA 제도는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보험감독 당국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됨.
-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RAAS 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, 이는 RBC 제도 기준에 의한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에 불과한 실정임.
- 한편, 우리나라 은행감독당국은 2010년 10월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(이하 'ICAAP'라 함)의 국내 도입 추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함.<sup>3)</sup>

## 2. ORSA 기본개념 및 추진 현황



### 가. 기본 개념

- 유럽 및 미국의 ORSA는 바젤 II의 Pillar 2 내 ICAAP와 유사한 제도임.
  - ICAAP는 은행의 모든 중요 리스크에 대한 인식·평가·측정·관리·보고를 통해 재무건전성 상황을 보증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, ORSA는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것임.
  -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보고한 자본적정성 평가를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, 이러한 점검은 감독당국점검(이하 'SRP'라 함)의 중요 사항에 해당됨.
- 유럽 및 미국의 ORSA는 보험회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(이하 ERM)에 통합되는 기능으로 표준모형<sup>4)</sup> 또는 승인받은 내부모형<sup>5)</sup>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개념임.
  - 유럽 및 미국의 ORSA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와의 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회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하나의 기능으로 볼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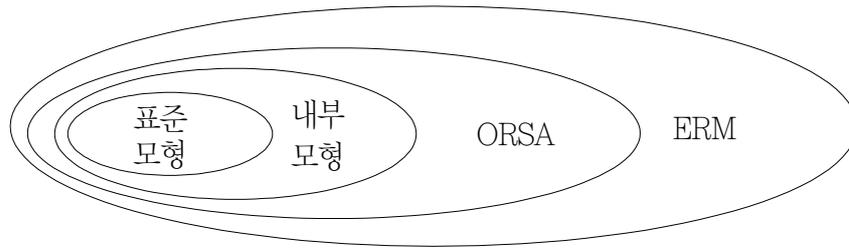
3) 금융감독원의 “2010년 업무현황(국정감사 자료, 2010. 10. 12)”을 참조함.

4) 표준모형은 EU Solvency II에서 제시한 감독요구자본 산출모형을 말함.

5) 승인받은 내부모형은 감독요구자본 산출을 위해 감독당국이 승인한 보험회사의 보유 리스크 측정모형을 말함.

- 보험회사는 표준모형 또는 승인받은 내부모형보다 확장된 개념을 적용하여 ORSA를 수행할 수 있음.
  - 예를 들어, ORSA는 표준모형 또는 승인받은 내부모형에서 고려하지 않는 리스크를 적용하거나, 높은 신뢰수준, 장기간의 평가기간(예, 3년이나 5년) 등도 적용할 수 있음.

〈그림 1〉 ORSA와 ERM 관계



주: ERM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말함.  
 자료: Tower Watson(2011, 4), "Insights :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".

#### ■ 유럽 및 미국의 ORSA는 보험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리스크 중심 경영을, 감독당국에게 리스크 중심 감독을 가능하게 함.

- 보험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ORSA를 통해 자사의 사업모델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본규모, 리스크 전가 전략 등을 인지할 수 있음.
- 동 이사회는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진에 대한 관리·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.
- 보험감독당국은 리스크 중심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현황 및 관리 능력을 ORSA 점검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.
- 특히,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ORSA 점검을 통해 리스크 프로파일 변화뿐만 아니라 장래 자기자본 포지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.
- 또한, 보험감독당국은 ORSA를 통해 자본 확충 또는 내부모형 개발을 권고하는데 필요한 정보 획득도 가능함.

#### 나. 추진 현황

##### ■ 유럽은 Solvency II 시행 시 ORSA를 보험회사에 적용하여 감독당국이 점검할 예정임.

-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유럽의 Solvency II 지침은 보험회사에게 ORSA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, 감독당국이 이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또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ORSA를 통해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인식 및 측정하게 하고, 그 결과를 리스크 관리·통제, 한도 설정 등 내부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함.

#### ■ 미국은 NAIC의 SMI 일환으로 마련한 ORSA 도입 방안을 2011년 1월에 공표함.

- 미국 NAIC는 SMI의 일환으로 ORSA를 검토하였고, 이를 위해 유럽 Solvency II 및 IAIS의 ORSA를 벤치마킹함.
- 미국 NAIC는 2010년 8월 ORSA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고, 2011년 1월에 ORSA 도입 방안을 공표함.

### 3. ORSA 주요 내용<sup>6)</sup>



#### 가. ORSA 원칙 및 요건

- ORSA는 모든 중요 리스크를 대상으로 정기적, 미래 지향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, 또한 독립적 평가, 문서화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.
  - ORSA는 보험회사 스스로 정기 검토하고, 보험회사의 집행 및 관리 주체(예, 이사회)는 이를 승인해야 함.
  - 동 제도는 보험계약상 의무에 대한 보험회사의 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요 리스크를 대상으로 적절한 측정 및 평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실시됨.
  - 또한, 전사적 리스크 관리와 통합되어 운영되고, 미래지향적으로 수행되며, 보험회사의 경영계획 및 프로젝트를 반영하여야 함.
  - 이에 보험회사는 ORSA 프로세스 및 결과를 입증하고, 내부적으로 문서화하며, 독립적으로 ORSA 수행결과를 평가함.
- ORSA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의 통합, 리스크 관리 문화의 촉진, 감독당국 보고, 리스크 관리 정책의 수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

6) CEIOPS의 “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”(CEIOPS-IGSRR-09/08, 2008. 5), NAIC의 “U.S.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(ORSA) Proposal”(2011. 2) 등을 참조함.

- ORSA는 보험회사가 자사의 장·단기 리스크와 필요 자기자본량을 평가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어야 하며, 건전 비즈니스를 위해 리스크 프로파일과 자기자본을 연계하는 등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에 기여하여야 함.
- 한편, ORSA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평가도 감독당국 점검사항의 일부로서 제출되어야 하며, 동 제도의 복잡성은 비즈니스에 내재된 리스크의 특징, 복잡성 및 규모에 비례하여야 함.
- 또한, ORSA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일부이므로 ORSA 프로세스에 관한 정책 사항들은 문서화된 리스크 관리 정책에 반영되어야 함.

#### 나. ORSA 평가항목(또는 산출결과)

##### ■ 보험회사의 ORSA는 지급여력 니즈(Overall Solvency Needs)에 관한 정보를 산출함.

- 지급여력 니즈 또는 자기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을 감안하여야 함.
- 경영계획 내 장기 프로젝트, 경제적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반영하여야 하며, 불리한 경제 상황에서 채택 가능한 관리행위를 감안하여야 함.
-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게 경영계획 내 장기 프로젝트를 선정한 논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, 방법 및 실무관행의 적절성을 입증하여야 함.

##### ■ 보험회사의 ORSA는 요구자본에 대한 규정 준수를 지속적으로 평가함.

- ORSA는 경영계획에서 고려하는 기간 동안 적격 자기자본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함.
- 이에 요구자본 및 적격 자기자본의 변화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.

##### ■ 보험회사의 ORSA는 리스크 프로파일 평가 및 결과를 고려함.

- 보험회사는 ORSA를 통해 비즈니스 니즈에 필요한 자기자본량과 감독당국의 요구 자본량 간 차이를 분석하여야 함.
- 이러한 분석 결과 동 자본량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이유를 감독당국에 설명하여야 하며, 이러한 차이가 요구자본의 계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.

## 다. ORSA 보고서항

■ 보험회사는 ORSA 보고 프로세스, 자본 및 지급여력 포지션, 자본계획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함.

- 보험회사는 법적 구조와 관리 구조, 핵심 비즈니스 및 시장 환경을 설명하여야 함.
- 보험회사는 감독요건 및 경제 환경을 반영한 현행 자본 및 지급여력 포지션, 그리고 계획기간(예, 3~5년) 내 예측 자본 및 지급여력 포지션을 설명하여야 함.
- 보험회사는 이외에도 리스크 관리 철학, 리스크 지배구조·한도·인식 및 평가,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, 자본계획, 활용 검증 등을 설명하여야 함.

〈표 2〉 ORSA 보고서의 보고 항목 및 내용

항목	보고내용
1. ORSA 보고 프로세스	ORSA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는 지배구조를 설명
2. 회사 지배구조 및 시장 환경	보험회사의 법적 및 관리 구조, 핵심비즈니스 및 시장 환경을 설명
3. 리스크 관리 철학	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철학을 설명
4. 리스크 지배 구조	리스크 지배구조, 리스크 통제 프로세스, 절차 및 정책 등을 설명
5. 리스크 한도	리스크 한도, 한도 관리 프로세스를 설명
6. 리스크 인식 및 평가	중요 리스크를 인식, 평가, 우선순위 결정 등의 프로세스 및 절차를 설명
7. 현행 자본 및 지급여력 포지션	감독요건 및 경제 환경하의 지급여력 포지션을 설명
8. 예측 자본 및 지급여력 포지션	계획 기간(예, 3~5년) 경과 후 예측 자본 및 지급여력 포지션을 설명
9.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	타당하고 가능한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자본 및 지급여력 포지션을 설명
10. 자본 계획	기준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또는 부정적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에 따른 자본계획을 설명
11. 활용 검증(use test)	리스크 및 자본 관리 행위와 관리 프로세스 및 활동의 통합 방법을 설명
12. 기타	보고기간 내 다른 요인에 의한 리스크, 자본 및 지급여력 평가를 설명

자료: PwC(2009, 6), "Bridging risk and capital: Countdown to Solvency II".

## 4. 시사점



- 보험회사(특히, 이사회)는 ORSA를 통해 중기지급여력 니즈(3~5년)를 파악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자본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  - 보험회사들은 산업 내 또는 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영향이 증대될수록 노출된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대응하여야 함.
  -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표준모형에 국한한 재무건전성에서 벗어나 장래 환경을 반영한 경영전략이 고려된 리스크 및 지급여력 포지션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.
  - 또한, 외부 요인 또는 장기간 경영계획에 의한 리스크 상태 변화에 대비함과 동시에 지급여력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을 강건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.
  
- 보험회사는 ORSA를 통해 자사의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관리 능력을 보험감독당국에 보여줄 수 있으며, 이는 보험감독당국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.
  -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관리능력을 요구하고 있음.
  - 유럽 및 미국 보험감독당국은 이를 점검하기 위해 보험회사에게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.
  - 이러한 요구를 통해 보험회사는 자사의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며, 이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감독당국의 신뢰도 제고될 수 있음.
  
- 아울러 보험감독당국은 ORSA에 대한 감독점검을 통해 리스크 중심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, 이는 리스크 중심 감독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  - 보험감독당국은 최근 개정된 RAAS 제도, 도입을 추진 중인 내부모형의 승인제도 등을 통해 RBC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.
  - 그러나 RAAS 제도 내 자본적정성 평가는 감독 목적의 지급여력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, 추진 중인 내부모형의 승인제도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.
  - 따라서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실제 리스크 프로파일을 보여줄 수 있는 ORSA를 통해 RBC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 **kiri**